

##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이병윤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원형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택시업계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택시 사업자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며  
원가 부담과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나,  
기존 카드 결제 수수료의 지원 근거가 되던 조례의 유효기간 경과로,  
현재는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 이에 동 제정안은 업계 부담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전가될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대한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 이에 안 제4조를 신설하여  
택시요금 10,000원 이하를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  
그 카드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동 조례안은 한시적 조례로써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있으며,  
기존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의 근거였으나  
유효기간 경과로 실효되었던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를  
폐지하는 부칙을 담아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